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2049694(본소), 2016나2049700(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 양수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8304(본소), 2017다228311(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2049694(본소), 2016나2049700(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12963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4. 13.

판결 선고 2017. 4. 27.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129633(본소),
2015가단132783(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분쟁

(1) C은 양돈업 및 음식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같은 목적으로 2005년경 설립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영업 일체를 이전받아 2011. 12. 7.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09. 12. 2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는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는바, 원고와 C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E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법적 분쟁을

겪었다.

(2) 2013. 2. 22.경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F, C 및 원고가 모여 서로에 대한 각자의 소송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원고의 주식양도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E와 C은 이에 관한 공증을 원고에게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발행인 E 및 C, 발행일 2013. 2. 25., 지급기일 2014. 4. 30., 수취인 원고,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2013. 2. 25.위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C과 피고, 원고 사이의 E 사업권 양도계약

(1) 피고는 2010년경 C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돼지사육업에 투자하면 6개월마다 이익금으로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고 사업이 종료되면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C을 형사고소하였다. C은 2014. 4. 29.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었고,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292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사기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5. 10. 5.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2) C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2015. 3. 25.경(갑 제4호증의 1에는 '2014. 3.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 첨부된 E의 인감증명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에게 E의 사업권 일체(폐기물처리업, 제조업 등, 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이하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5. 6.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E 대표이사 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사업권을 다시 원고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시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 8,000만 원은 2015. 7.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C에게 부탁하여 2015. 6. 29.경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서상의 양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이하 '제2차 사업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권양수

(1)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E의 재산인 함마분쇄기, 선별기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014본828호 사건 등)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4. 6. 9.경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8849호)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자신이 2011. 8. 주식회사 D의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E가 이를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식회사 D이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할 때 회사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15. 6. 10. 원고와 함께 항소심 법원에 가서 원고가 작성해서 피고에게 준 항소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E의 다른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진행된 E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본989호)에 참가하여 2015. 9. 10. 매수가 7,832만 원에 E의 재산인 함마분쇄기, 선별기 등 유체동산을 경락받았다. 원고는 2015. 9. 15.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안성시에 폐기물처리(변경)신고를 하여, 2015. 9. 18. 업체명이 E에서 G으로, 대표자명이 C에서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3, 6, 을 제1, 2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금 7,000만 원이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고, 피고가 변경허가에 필요한 E 명의의 동의서와 공증서류를 발급받아 주어야 할 채무 등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원고가 제3자의 강제경매로 E의 유체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산됨으로써 생긴 부당이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협력 덕분에 E에 대한 변경허가절차까지 받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사업권양도대금 1억 5,000만 원 중 미지급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내용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E 대표이사 C으로부터 양도, 양수받은 E의 폐기물처리업, 제조업(자가단미사료화업)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피고는 C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만 하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다 하는 것이고,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제1차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바탕으로 양수인 명의를 원고로 바꾼 제2차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자신의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 앞으로 관할관청의 명의변경허가를 받아야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 통상 사업권 양도·양수관계에서 양도인은 사법(私法)적인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관청의 허가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양수인이 허가를 받는데 협력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명의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명의변경허가에 필요한 E 명의의 동의서와 공증서류를 발급받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폐기물처리업 명의변경에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관할관청에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위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하여 항소를 취하해 주고, C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그 전 선처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을 뒤집고 이 사건 계약 이후 C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하였다. 증인 C도 이 사건 사업권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갖추어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③ 이 사건은 결국 원고와 C 사이의 오랜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C을 형사고소한 것을 알고 2015. 5.경부터 피고와 접촉하여 'C이 피고에게 미처 갚지 못한 1억 5,000만 원을 원고가 갚겠으니 이 사건 사업권을 넘겨달라'고 제안하고 'C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피고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먼저 7,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원고는 C를 구금시키는 등 곤란에 빠뜨려 E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를 이용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C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변제를 받는 대신 이 사건 사업권을 전매함으로써 원고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으려고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돈을 모두 지급하여 주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의 가치를 1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는 원고가 가진 E 주식의 가치를 2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E의 가치는 2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본989호)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관할관청의 명의변경허가를 받았다고 본다면, 원고는 고작 78,32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온전히 양수받아 명의변경허가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이 양수받은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에게 넘긴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거나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한 유효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권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원고가 권리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재훈

판사박정운